



제 42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84호)

2025.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제21대국회 심사경과	3
III. 관련 협회 의견	3
IV. 농림수산물식품모태조합 관련 개념 및 출자·투자 구조	5
V. 검토의견	16
1.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 마련	16
2. 창업기획자의 운용사 참여 근거 마련	29
3.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차입근거 마련	38
4.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52
5. 행정처분 및 등록의 취소 사유 추가	65

[참고자료]

참고 1.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현황	71
참고 2. 농식품 분야 투자 현황	72
참고 3. 세컨더리펀드 결성 현황	73

I.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1. 14.

다. 회 부 일 : 2024. 11.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벤처투자 시장 장기침체로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

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추가하여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하는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호).
- 나. 초기 기업 발굴·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자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 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함(안 제14조의2 신설).
- 라.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 마.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함(안 제28조).
- 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 제도 신설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추가함(안 제30조).

Ⅱ. 제21대국회 심사경과

제21대국회에서도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차입근거 마련, 민간재간접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내용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3.6.8.)」이 발의된 바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2024.5.29.).

이번 개정안은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와 창업기획자의 운용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Ⅲ. 관련 협회 의견

1.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¹⁾는 최근 유동성 감소과 경기 침체로 농식품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의 결성 근거 마련,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당해 투자목적회사

1) 설립일: 2022.11.1., / 대표자: 권준희 / 설립목표: 농림수산식품분야 벤처투자 증대와 투자자 저변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허용,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설립 근거 마련과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나아가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임.

2. 초기투자엑셀레이터협회

초기투자엑셀레이터협회²⁾에서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창업기획자가 추가될 경우, 초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보육이 확대되어 농식품 분야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우수 인재의 농식품 분야 유입 및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임.

2) 설립일: 2017.12.22. / 대표자: 전화성 / 설립목표: 창업기획자 및 창업초기 투자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기관 간, 중견·대기업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초기투자 생태계를 구축

IV. 농림수산식품모태조합 관련 개념 및 출자·투자 구조

2000년대 들어 농수산물의 시장개방과 농업강대국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 농어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³⁾의 규모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또한 기존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참여를 원하는 민간자본 등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⁴⁾.

이에 2010년 1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0.1.25.제정, 2010.5.26.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결성 근거⁵⁾가 마련되었음.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나 회사(자펀드)에 출자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이나 기금 등으로 조성한 펀드임.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은 2010년 출범 이후 보조·융자를 보완·대

3) 농림수산식품경영체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

4)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80636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조진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9.11., p 7~8

5)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체하는 제3섹터형 농식품 정책금융⁶⁾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4년 11월까지 총 7,047억 원을 조성하였음.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연도별 재원 조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11	계
농특회계	507	-	-	-	-	-	-	-	-	-	-	-	-	-	-	507
농안기금	-	500	500	500	600	-	-	-	-	-	-	-	-	-	-	2,100
FTA기금	-	-	-	-	-	500	300	200	100	200	350	400	400	400	550	3,400
수산물안정기금	-	-	-	-	100	100	100	100	100	70	70	70	70	70	190	1,040
농금원	0.3	-	-	-	-	-	-	-	-	-	-	-	-	-	-	0.3
계	507.3	500	500	500	700	600	400	300	200	270	420	470	470	470	740	7,047.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 '13.3. 정부 조직개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분리하여 운영

농어업분야는 기후, 토양, 수질, 계절 변화 등 다양한 자연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고, 기상 조건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변동될 수 있음.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체계적인 데이터나 통계 자료가 부족한 특성이 있어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와 농식품경영체 간 정보비대칭이 존재함.

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나오는 자금과 투자대상인 농식품경영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5조⁷⁾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을 운용하고,

6) 3섹터형 농식품 정책금융 : 공공부문(1섹터)과 민간부문(2섹터)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경영체에 투자하는 형태의 농식품 정책금융

7)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직·간접 투자를 행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투자전문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11조⁸⁾는 ① 벤처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⁹⁾ (신기사), ③ 투자관리전문기관, ④ 농·수협 조합 및 중앙회 등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과 민간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을 결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8)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한다.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벤처, 중소, 중견기업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또는 융자를 해주는 금융업자로, 여신전문 금융업자 중의 하나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창투사와 비슷하나 투자 및 여신 금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투사보다 업무 범위가 넓으며, 창투사와 달리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음.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사업 추진체계】

행정기관 (농식품부, 해수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벤처투자회사, 신기사 등)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지침 마련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 수립 ●출자사업 공고 ●농식품투자조합 심사 및 선정 ●농식품투자조합 관리·감독 ●농식품경영체 상담 및 컨설팅 ●피투자농식품경영체 가치증진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제안서 제출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농식품경영체 투자 ●농식품경영체 사후관리 ●투자금 회수 ●농식품투자조합 해산, 청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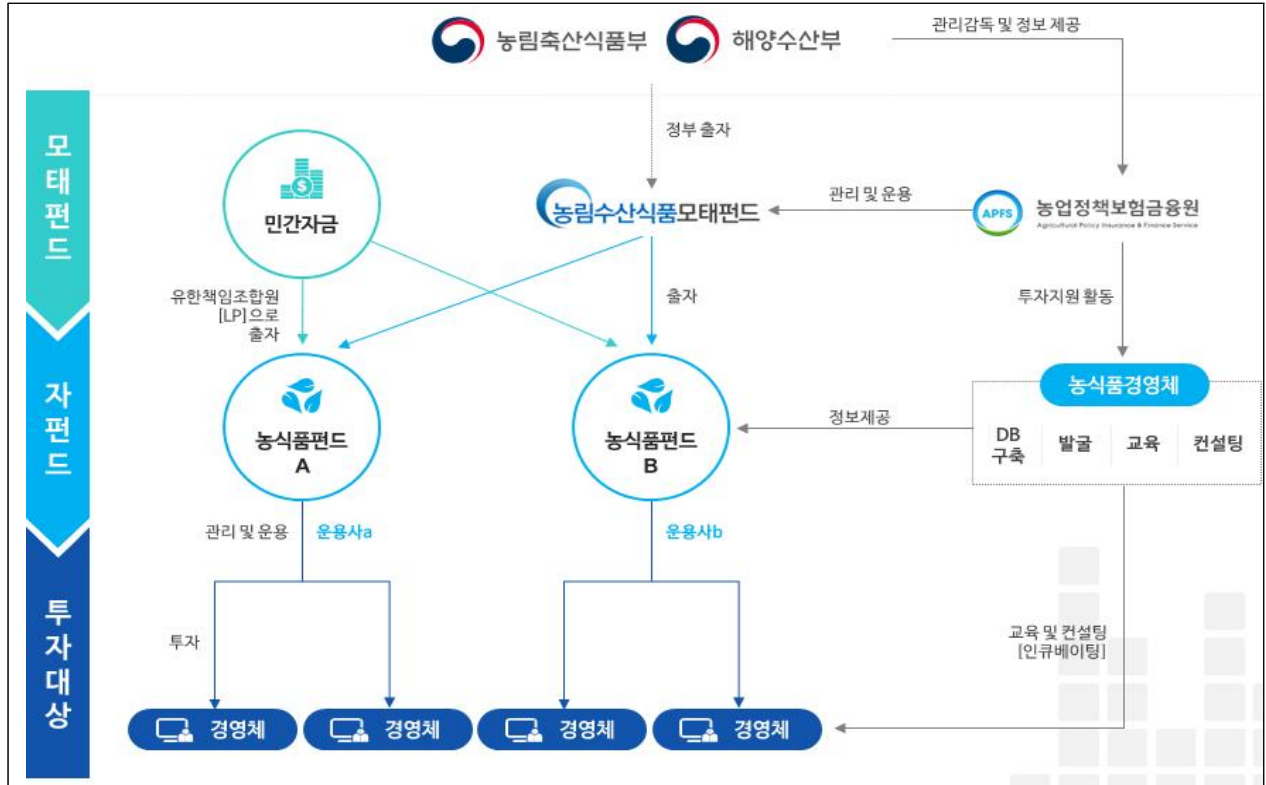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출자·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① 정부(농림부, 해수부) 재정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결성(정부 출자) ⇒ ② 농림수산식품모태조합(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을 관리·운용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민간(자산운용사)과 매칭하여 벤처투자회사¹⁰⁾ 등이 결성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농식품펀드, 자펀드)에 출자 ⇒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 성장 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농식품경영체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 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 농식품경영체로부터 투자금 회수 ⇒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재투자”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통상 8년이며, 존속기간 종료 후 조합 청산까지 평균 1.9년이 소요¹¹⁾되

10) 벤처투자회사 :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투자회사로 승인을 받은 기업

어, 최종적으로 조합 설립에서 청산까지 통상 9.9년 소요된다고 함.

【그림 1】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투자 구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현행법 제11조제2항12)은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을

11) 24.12월 현재 청산조합 24개의 평균 청산기간은 1.9년

12)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농식품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으로 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규정함.

현행법 제14조13)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농식품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업무집행조합원의 준수사항(조합의 자금 중 일정액 이상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금지사항(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등 조합의 설립 목적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된 정부재원과 민간자본의 효율적 운용을 담보하고자 하고 있음.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3년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농식품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준수사항】

구분	주요 내용
선관주의 의무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중한 자산관리
투자 제한사항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약상 투자대상 및 방법, 의무투자비율 등
공시/보고 의무	정기/수시 운용보고, 중요 사항 즉시 보고, LP 요청자료 제출
이해상충 관리	특수관계인 거래 및 임직원의 이해상충 행위 금지 등
운용인력 관리	핵심운용인력 및 전문인력 유지(변경시 보고)
출자의무	약정된 출자금 납입의무
규약준수	투자조합 규약에 명시된 의무사항 이행
리스크 관리	투자기업 가치평가 실시,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손실위험 최소화 노력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26. 제출)

【그림 1】에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문기관이자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은 모태펀드의 자펀드인 농식품펀드·수산펀드이며,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펀드·수산펀드를 관리·운용하는 민간운용사가 됨.

한편,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한책임조합원(LP : Limited Partner)’이란 농식품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출자액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임.

【GP와 LP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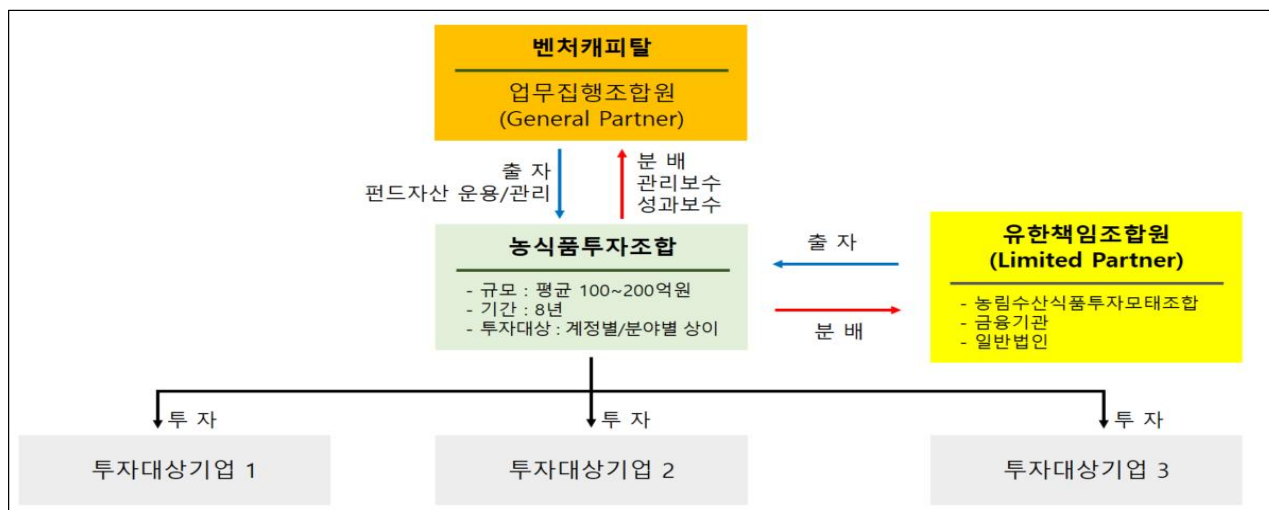
구분	GP(General Partner)	LP(Limited Partner)
명칭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역할	펀드 운용 및 투자집행 책임자	자금 출자자
권한	투자의사 결정, 펀드운영 전반	제한적 의결권(중요 사항만)
책임범위	무한책임	출자금액 한도 내 유한책임
수익구조	관리보수 + 성과보수	투자수익 분배금
의무사항	펀드운용, 실사, 투자, 관리, 회수 등	출자금 납입
출자의무	최소 1% 이상	자율 결정(한도 의무 없음)
업무범위	펀드운영 전반	중요 의사결정 참여
보고의무	관계부처, LP에게 운용현황 보고	없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26. 제출)

유한책임조합원(LP)은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그 운용을 맡기며, 【그림 1】에서는 민간자금(민간운용사), 농림수산식품모태조합이 이에 해당함.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업무집행조합원(GP)과 유한책임조합원(LP)의 출자·분배 구조는 다음과 같음.

【그림 2】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및 GP·LP 출자·분배 구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그림 2】에서 벤처캐피탈(업무집행조합원, GP)은 비교적 소규모의 자기자본을 출자하며, 농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및 투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게 됨.

농식품펀드에 출자하는 농림수산물식품모태조합과 민간출자자(금융기관, 일반법인)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볼 수 있음.

LP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출자금을 담당하는 투자자로, 투자 손실은 출자금 한도로 제한되며, 조합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수동적 역할을 수행함.

조합이 투자한 농식품 관련 기업의 최종 회수¹⁴⁾(Exit) 또는 배당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조합 운영경비 등을 제외하고,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14) 투자에서 최종 회수란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을 다시 현금화하여 회수하는 과정을 말하며, 투자 활동의 마지막 단계로,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을 말함.

비례하여 배분됨.

이후 기준을 초과한 초과수익 부분에 대해 GP는 운용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를 받고, 나머지는 조합원 간 약정된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구조임.

2024년 11월 기준으로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은 135개 농림수산물투자조합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 농식품펀드는 115개(1.3조원), 수산 펀드는 20개(2,085억원)임.

민간 출자액 약 9,776억원을 포함하면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누적 운용자산은 총 2조 2,125억원인데, 실제 투자는 1,248건으로 약 1조 5,143억원이 이루어져 투자 소진율은 68%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11월 기준으로 총 23개의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이 청산완료되었는데, 평균 수익배수¹⁵⁾는 136%, 내부수익률은 7.4%로 나타났다.

15) 평균 수익배수: 투자자가 투자 원금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을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계산 공식> 평균 수익배수(MOIC)=총 회수 금액(투자자가 기업 매각, IPO, 배당 등으로 회수한 금액)/총 투자 금액(투자 시 투입된 원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예정) 현황】

(기준 : '24.12월, 단위 : 억 원)

계정	펀드형태	투자분야	펀드수	펀드 결성규모		
				모태펀드	민간	총액
농 식 품	농식품 투자조합	농림축산업	5	460	460	920
		농림축산식품업	26	2,630	3,001.1	5,631.1
		식품산업	5	420	520	940
		특수목적	73	6,520	3,064.8	9,584.8
		농식품 통합지원 (매칭형 직접투자)	2	39.6	0.4	4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축산식품업	3	365	835	1,200
		특수목적	1	157	163	320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특수목적	2	270	551	821
	벤처투자조합		3	224	127.4	351.4
	소 계			120	11,085.6	8,722.7
수 산	수산투자조합	수산업(일반)	11	1,000	630	1,630
		특수목적	7	670	317.9	987.9
	창업투자조합	수산업(일반)	1	140	60	200
	한국벤처투자조합	수산업(일반)	1	105	45	150
	소 계			20	1,915	1,052.9
합 계			140	13,000.6	9,775.6	22,776.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투자현황】

(기준 : '24.11월)

계정 구분	농식품투자계정	수산투자계정	합 계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개수	115개	20개	135개
자펀드 결성 총액(A)	19,157억원	2,968억원	22,125억원
투자 건수	1,084건	164건	1,248건
투자 금액(B)	13,058억원	2,085억원	15,143억원
투자 소진율(B/A)	68.2%	70.3%	68.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V. 검토의견

1.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호)

가. 투자의 정의를 ‘자금지원’에서 ‘자금출자’로 변경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투자를 수익의 배분을 위한 ‘자금지원’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은 투자의 정의를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자금지원’에서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금출자’로 변경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물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물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물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현행	개정안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다. <u>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u> <u><신 설></u>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농림수산식품산업을 운용하는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하여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출자</u> 라. <u>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인수</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투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은 공적자금의 투입 개념이므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의 출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 행위를 ‘자금을 지원하여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는 과정’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음.

반면, 개정안은 투자 행위를 명확한 형태의 자본투입으로 규정하고 해당 경영체의 지분에 참여하려는 성격을 강조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자금 지원’이란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구체적인 구분 없이 금전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며, 보조금·대출 등과 같은 형태의 지원도 포괄함.

‘자금 출자’란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투자’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정의임.

통상 주식, 채권, 벤처 캐피탈(VC)¹⁶⁾, 사모펀드(PEF)¹⁷⁾와 같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적 특성이 강조되는 분야에서는 자본을 투입하는 형태의 투자 행위를 ‘자금 출자’라고 표현함.¹⁸⁾

16)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은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회사를 의미하며 주로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 성숙도가 낮고 불확실성이 큰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대신 지분을 확보하여 향후 기업 가치 상승 시 투자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17)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나 부유한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펀드를 의미함. 주로 비상장 기업 혹은 상장 기업의 지분을 비공개적으로 인수하거나, 부동산, 인프라 등 비교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대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공모펀드와 달리 일반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판매하지 않으며, 투자 제한, 최소 투자금액, 투자자 자격 요건 등이 엄격하게 관리됨.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높여 향후 기업 매각이나 상장(IPO) 시 자본이익을 추구하거나, 안정적 현금 흐름을 기대하는 전략적 자산 관리 수단으로 활용됨.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자금지원 및 자금출자의 개념 비교】

구분	자금지원	자금출자
법적성격	금전적 지원	자본 투입(투자)
소유권	대출기관 등	주권
상환조건	원리금 상환 또는 무상환	무상환
위험부담	지원자 위험 제한적	투자자 큰 위험부담
형태	대출, 보증, 보조금	주식, 지분투자
수익구조	이자수익	기업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19. 제출)

투자로 인한 위험부담과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자금지원’보다 ‘자금출자’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이라 명시함으로써, 투자의 본질적인 목적이 이익과 가치상승분과 같은 경영체의 성과에 따른 몫을 확보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¹⁹⁾.

투자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투자”로 인한 “성과의 배분”이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9) 유사입법례인 벤처투자법 역시 벤처투자조합을 정의하면서 ‘성과의 배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벤처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9. ~ 10. (생략)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12. ~ 13. (생략)

다만, 현행법은 농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산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식품경영체는 농림수산식품산업 외의 사업에도 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으로 명확히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나.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투자의 정의에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다.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생략)

현행	개정안
<신설>	라.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인수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투자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VC)이나 사모펀드(PEF)와 같은 투자기관은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한 뒤, 상장²⁰⁾(IPO), 기업 매각²¹⁾(M&A) 등의 “최종 회수(exit)”를 통해 수익을 실현함.

그러나 이러한 최종 회수 과정은 기업 성장 기간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불확실성이 큼.

한편, 투자중간 회수시장이란 최종 회수 이전에 투자자가 보유한 지

20) 상장(上場, 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등 공인된 주식시장에 주식을 등록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기 쉽고, 투자자들은 기업 지분에 투자할 수 있게 됨.

21) M&A(Mergers and Acquisitions) : 기업 간의 합병(Mergers,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인수(Acquisitions,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대부분(또는 전부)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 M&A는 기업의 성장 전략, 시장 지배력 확보, 신기술 및 인력 확보,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업 활동임.

분을 ①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② 2차 거래(Secondary deal), ③ 중간 배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나 메커니즘을 의미함.

제3자 매각	2차 거래 (Secondary Transaction)	중간 배당 (Interim Dividend)
투자, 기업 매각, 또는 자산 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특정 자산(주식, 지분, 부동산 등)을 원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독립된 당사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존 기업의 최초 상장(IPO)이나 최종 매각(M&A)을 통한 '최종 회수' 이전 단계에서, 제3의 투자자나 다른 기관에 매각하는 거래	기업이 통상적인 회계연도 결산(년말 결산) 및 배당 결정 이전 시점에, 특정 시기에 중간 형태로 투자자에게 수익(배당금)을 분배하는 것

※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투자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처럼 기업에 투자한 자금이나 지분을 최종 회수(예: IPO나 M&A)하기 전, 투자 중간 단계에서 일부 또는 전체를 시장을 통해 유동화²²⁾하거나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가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활발히 운영되는 것을 의미함.

현행 제2조제2호는 투자의 방식으로 ①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가목) ②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나목)를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제2조제2호 가목의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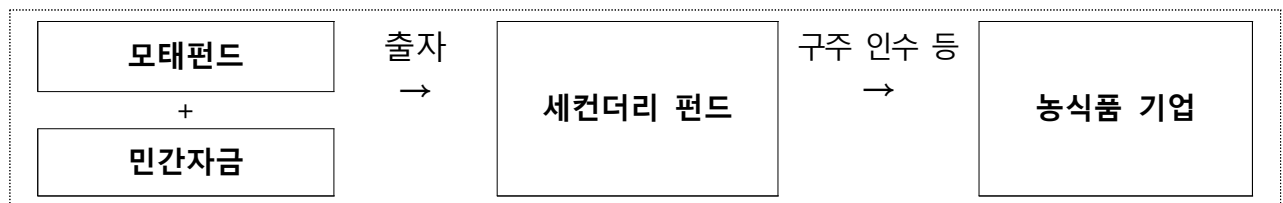
22) 유동화(流動化)는 자산이나 권리를 현금화하거나,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 유동성이 낮은 자산(예: 부동산,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 과정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유동성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전환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는 농식품투자조합이 보유한 구주를 매입하는 방식의 “구주(舊株) 세컨더리 펀드”에 해당함.

구주 세컨더리 펀드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신주(新株)가 아닌, 기존 주주, 기존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이미 발행되어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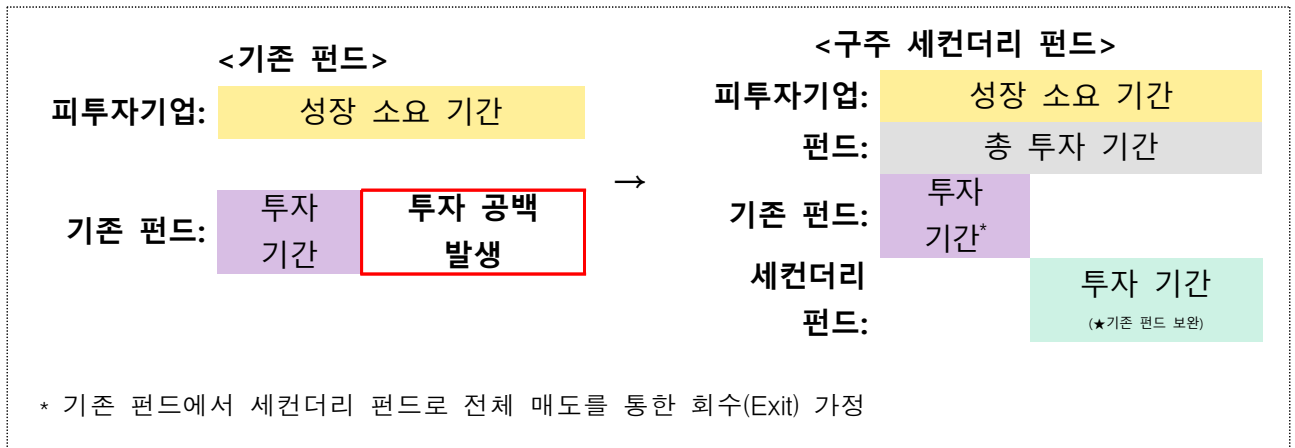
이를 통해 기존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유동화할 수 있고,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기존 주식을 확보하여 성장 잠재력에 투자할 수 있음.

[구주 세컨더리 펀드 운영 기본 구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구주 세컨더리 펀드는 피투자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부족한 투자 기간을 보완하는 한편, 투자자로 하여금 빠른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재투자 여력을 제공하여 선순환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한편, 다른 방식의 세컨더리펀드인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란 펀드에 출자한 조합원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매입하는 방식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벤처투자법”)」 제5조에서도 LP 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 방식의 투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²³⁾.

즉,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 기존 유한책임출자자(LP, 여기서는 민간출자자와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를 의미)의 ‘출자 지분’을 매입하여 해당 LP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형태의 세컨더리 투자 전략 또는 펀드를 의미함.

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⑥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인수,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의 인수
3.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4.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5.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구주 세컨더리 펀드 및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 비교]

구분	구주세컨더리	LP 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정의	기존 주주의 보유 <u>주식</u> 을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매매)	벤처펀드의 <u>출자지분</u> 을 양도(매매)
거래대상	상장/비상장 기업의 <u>주식</u>	벤처투자조합 <u>출자지분</u>
거래시기	기업 성장의 다양한 기간	주로 벤처펀드 중/후기 단계
투자방식	벤처캐피탈(VC) 등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u>주식</u> 을 매입	벤처펀드의 LP들이 보유하고 있는 <u>지분</u> 을 인수
투자목적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	투자 자금 조기 회수
출자펀드 형태 [()안은 가능한 투자방식]	농식품투자조합(주식, 채권, 프로젝트 투자), 벤처투자조합(주식, 채권, 지분인수 등), 신기술투자조합(제한 없음)	벤처투자조합(주식, 채권, 지분인수 등), 신기술투자조합(제한 없음)
거래량 (미국 기준)	전체 세컨더리펀드 거래 중 29%를 차지(2016년 기준) * 출처: Collier Capital(2017)	전체 세컨더리펀드 거래 중 71%를 차지(2016년 기준) * 출처: Collier Capital(2017)
근거법률	농식품투자조합법 제2조제2호	농식품투자조합법상 근거 없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19.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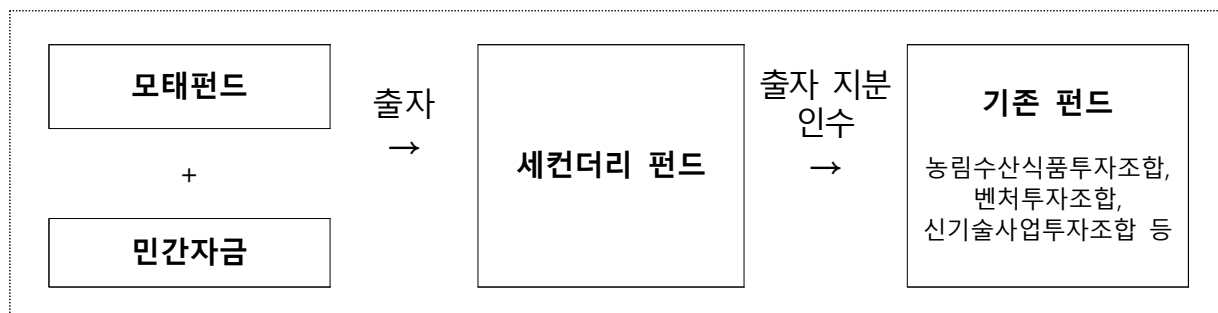
이러한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는 자금 유동성이 높아지며 펀드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 펀드나 사모펀드는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LP들은 해당 펀드의 만기나 청산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됨.

그러나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거나 펀드의 성과 전망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펀드 만기 이전에 지분을 매도하고 싶어하는 LP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는 그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LP들에게 중도 회수 기회를 제공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 운영 기본 구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즉, LP로 하여금 청산 전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 회전을 제고하는 등 민간자금 벤처투자 시장 참여 유인 확대에 기여하고, GP(여기서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자 농식품펀드·수산펀드를 관리·운영하는 민간운용사를 의미)의 입장에서는 참여 LP의 재무 안정성 문제로 출자금 미납될 경우 대체재 확보가 가능하여 안정적 조합의 운영이 가능함.

또한 LP 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는 특정 펀드의 일정 지분을 가져오는 방법이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유리하고 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한 기업도 인수할 수 있으므로 여러 기업에게 자금 회수 기회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측면도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이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LP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실정임.

즉, LP 지분 인수를 포함하는 세컨더리펀드를 ‘벤처투자조합’

(중소벤처기업부 관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금융위원회 관리) 형태로 결성 중인 상황으로 모태조합 출자 주체(농림축산식품부)와 자펀드 관리주체(중기부, 금융위)가 상이한 것임.

현재 농림수산물식품 세컨더리 펀드는 현행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라 결성된 ‘구주세컨더리 펀드’ 1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벤처투자법」에 따라 결성된 ‘LP 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3개로 총 4개임.

[농림수산물식품 세컨더리 펀드 결성 현황]

□ 총 4개 펀드, 1,221억원 규모 결성

(단위: 억원, 개)

구 분	2018	2021	2023	2024	합 계
세컨더리펀드 결성방식	구주 세컨더리 (현행법에 따라 결성)	LP 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벤처투자법」에 따라 결성)			
세컨더리펀드 결성액	200	520	200	301	1,221
펀드수	1	1	1	1	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19. 제출)

개정안과 같이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 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한다면, 모태조합 출자 주체와 자펀드 관리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통일할 수 있게 되어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자펀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펀드 결성 관련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현행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이 다른 농식품 투자조합의 LP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LP 지분 인수를 포함하는 세컨더리펀드를 '벤처투자조합'(중기부 관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금융위 관리) 형태로 결성 중인 상황으로 모태펀드 출자주체와 자펀드 관리주체가 상이	모태펀드 출자주체와 자펀드 관리주체를 통일하여 효율적인 자펀드 관리 도모 민간 출자자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효과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19. 제출)

또한 개정안은 투자 중간회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투자 생태계 전반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 경로를 다양화시키며, 혁신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창업기획자의 운용사 참여 근거 마련(안 제11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를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관리 전문기관, 농협·수협 조합 및 중앙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벤처투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 ----- ----- ----- -----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1. ~ 5의2. (현행과 같음)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개정안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u><신 설></u>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 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u>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u>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 ----- ----- -----. 1. <u>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창업기획자</u>----- ----- 2. 3. (현행과 같음)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전문성이 있는 창업기획자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창업기획자²⁴⁾란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전문보육(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 등)과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자를 의미함.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는 총 461개사임('23년 기준). 최근 3년간 창업기획자의 수는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함께 창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상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⑤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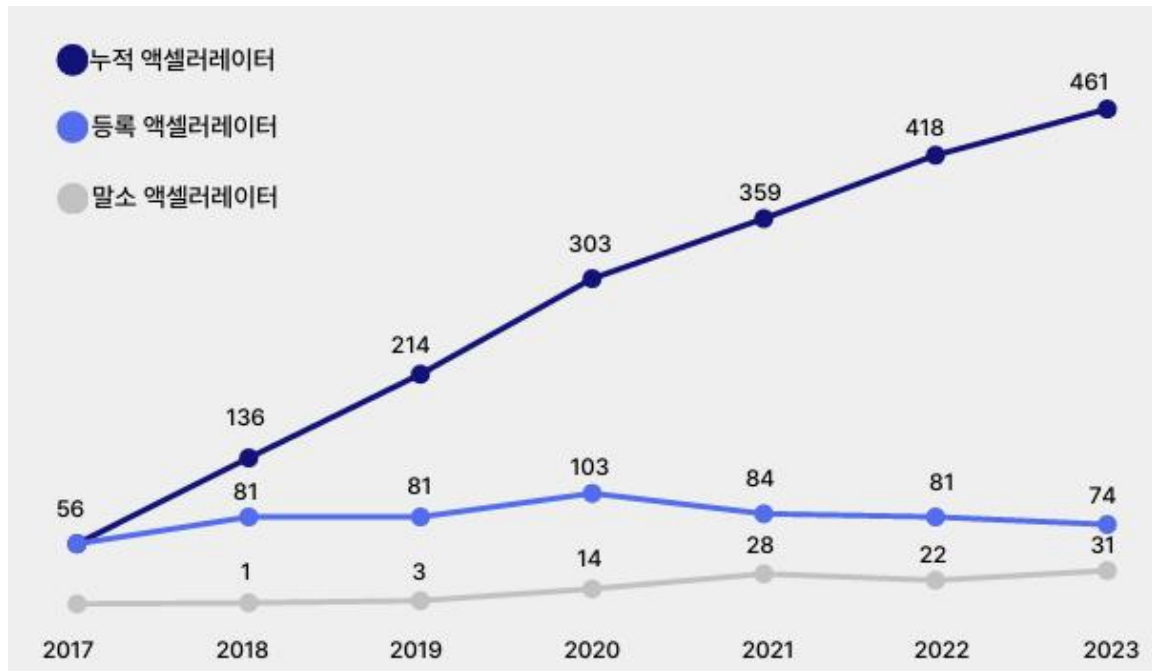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법 제24조 제2항 제1호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이나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함.

[엑셀러레이터 등록 및 말소 추이]

(단위 : 개사)



※ 자료 : 초기투자 엑셀러레이터협회 홈페이지(“2023 대한민국 엑셀러레이터 산업백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투자금액 및 투자기업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음.

최근 6년간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액은 2조 7,562억 원이며 이중 초기기업²⁵⁾ 투자액은 1조 6,488억원(59.8)임.²⁶⁾ 2018년 이후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지속

25) 초기기업과 초기창업기업은 의미가 같으나 초기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의미(「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제10호)하고,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의미(「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제3호)

26) 최근 5년간 농식품펀드의 중기업 투자비중은 44.5%, 초기기업 투자비중은 24.1%로 국내 벤처투자와 비교 시 중기 비중이 높고 초기 비중이 낮음. 창업기획자의 초기기업 투자액 비중은 59.8%에 해당하므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농식품펀드의 전반적인 투자비중보다 높은 편임.

되었던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의 전체 투자금액 및 전체 투자기업의 수는 각각 감소한 바 있음.

초기투자 엑셀러레이터협회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투자규모는 감소하였으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큰 투자규모에 해당하며, 투자규모의 감소는 이전의 과열된 투자 열풍이 점점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임. 이는 시장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향해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음.

[창업기획자의 투자액 및 투자건수]²⁷⁾

(단위: 백만원, 건, 개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투자금액	55,802	101,531	272,730	726,235	932,917	667,082
초기투자 금액	45,797	86,067	207,084	371,192	581,250	357,498
투자건수	469	807	1,308	2,230	2,747	2,377
초기투자 건수	398	681	1,061	1,571	1,916	1,632
전체투자 기업수	403	623	948	1,544	1,836	1,631
초기투자 기업수	339	520	776	1,082	1,282	1,15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벤처투자법」은 제정(2020.2.11.제정, 2020.8.12.시행) 당시부터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창업기획자를 포함하고 있었음. 이는

27) 초기투자기업, 초기투자건수 등은 법인설립 3년 미만 기업에 투자한 경우를 의미함.

초기창업자에 대한 발굴·육성·투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창업기획자의 투자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함이었음.

반면, 현행 「농수산물투자조합법」상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는 포함되지 않음.

[벤처투자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 관련 비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현행법	개정안
관리주체	중기부	농식품부	
창업기획자 투자의무	결성 후 3년 이내에 초기창업기업에게 투자금액의 <u>50%</u> 이내 투자	결성 후 3년 이내에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결성금액의 <u>60% 이상</u> 을 투자	
창업기획자 조합결성가능 여부	○	X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24. 제출)

현재 「벤처투자법」을 근거로 농식품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의 일종으로 보아 창업기획자가 운용할 수 있는데, 그 사례는 1건으로 다음과 같음.

[창업기획자의 농식품투자조합 운용 현황('24.11월 기준)]

□ 씨엔티테크 제13호 농식품투자조합(존속기간: '22.01.11~'30.01.10)

- 조합형태 : 벤처투자조합(창업보육 투자)
- 결성총액 / 업무집행조합원 : 71.44억원 / 씨엔티테크

□ 투자현황

- 33개 기업, 52.1억원 투자, 0.1억원 회수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19. 제출)

현행법에 따르면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는 개인위주로 소규모 결성·운영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고,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따라서 창업기획자가 좋은 투자처를 발굴한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지 못하는 등 초기기업 민간투자 확대에 제약이 있었음.

[창업기획자의 농식품펀드 운용사 참여 허용 관련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현행법상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 미포함 -초기기업(설립 3년 이내)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는 농식품 펀드 운용사로 참여가 불가하여 초기기업 민간투자 확대에 제약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 간 경쟁 유도를 통한 펀드 운용 효율성·전문성 제고 도모 * 엑셀러레이터는 초기기업 대상 창업보육·투자를 병행하는 기관으로 최근 5년간('17~'22년) 초기기업에 1조원 투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19. 제출)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를 포함할 경우 초기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창업기획자의 농식품

투자시장 진입을 통해 민간 투자 회사 간 경쟁 유도과 펀드 운용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창업기획자를 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로 인정한다면, 이들을 통해 농식품 분야 유망 초기기업에 대한 창업교육을 확대하는 등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3.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차입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림수산물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농식품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기재한 사항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 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2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식품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한다면, 농식품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후속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임.

다. 검토의견

① 투자목적회사 설립

최근 농림수산물식품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²⁸⁾, 그린바이오²⁹⁾, K-푸드 등 고성장이 전망되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높은 기술 수준 및 대규모 자금을 요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경영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 21일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 자본의 유동성을 확충하겠다는 것임³⁰⁾.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민간운용사)이 페이퍼 컴퍼니³¹⁾ 형태의 투자목적

28)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2024.12.20.제정, 2025.12.21.시행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9)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 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0)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 원 유치”, 2023.6.21.

31)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해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 사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재반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매일경제, 매경닷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투자목적회사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적·독립적 회사를 말하는데, 현재는 농림수산물식품분야의 투자목적회사가 없음.

기존 사업 주체(농식품투자조합)의 현금흐름과 개별사업의 현금흐름을 분리하기 위해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는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결산을 하고 수익을 배분하여 청산하는 회사로 활용됨.

따라서 투자 목적이 달성될 경우 자금 회수와 청산이 용이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유리함.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관련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현행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은 조합 명의 차입 불가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 목적회사 설립 및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투자 규모 확대 도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19.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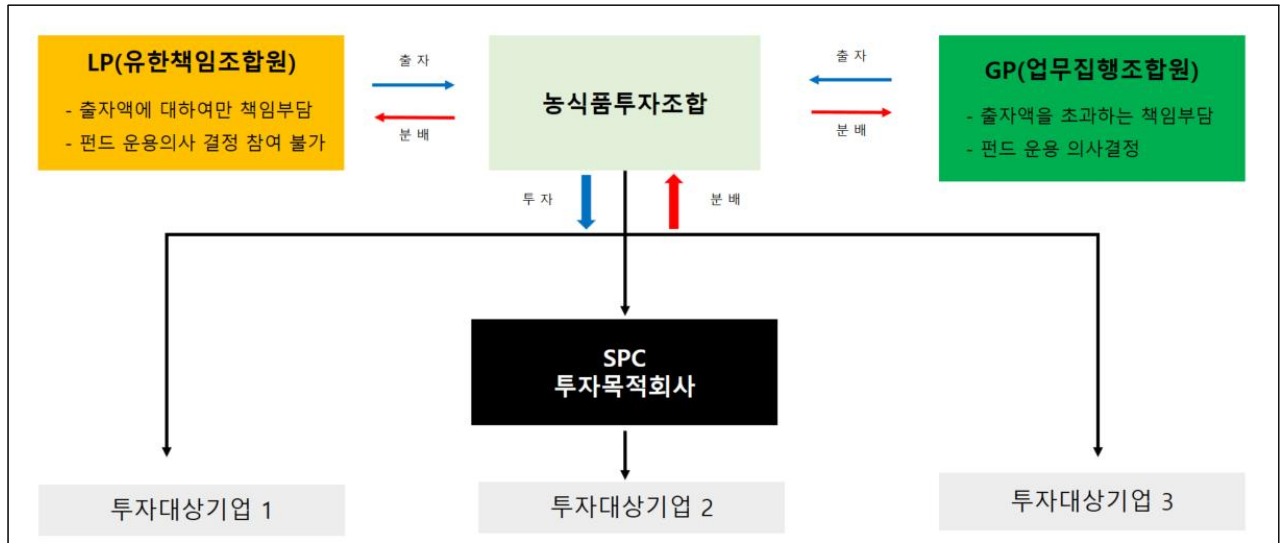
또한 투자목적회사는 농식품투자조합과 별개의 조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이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자본금까지만 책임을 지고 자본금을 초과한 손실금은 조합에 전가되지 않아 차입을 허용하더라도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투자목적회사와 농식품투자조합 비교]

구분	투자목적회사	농식품투자조합
설립목적	특정 투자 프로젝트 수행	농식품 분야 투자
투자대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야 투자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
운영기간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일정기간(통상 8년) * 4년 투자, 4년 관리
자금조달방식	금융기관 등 차입	출자
수익구조	■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 손실 발생 시 출자자본금까지만 책임을 짐	투자기업 매각 차익
현황	농식품 투자목적회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 설립할 수 없음 ※ 그 외 투자목적회사가 몇 개 인지 파악은 곤란(관련 통계없음)	농식품투자조합은 140개 (‘24.12.26. 기준, 청산조합 24개 포함, 농식품계정 120개, 수산계정 20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의 구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12월 개정 시행된 「벤처투자법」은 (법률 제19504호, 2023.6.20. 개정, 2023.12.21. 시행)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자금 차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개정안은 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투자목적회사 관련 개정안과 벤처투자법 비교】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농식품경영체에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조제1항제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 투자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농식품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 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2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식품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⑥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제14조의2제1항 각 호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1호)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사업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음.

투자목적회사와 농식품투자조합은 별개의 회사이므로 제1호의 요건과 같이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2호) 투자목적회사는 농식품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을 규정하였음.

투자목적회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의 완전자회사³²⁾가 아닐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에 농식품투자조합의 의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2호와 같이 농식품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32) 완전자회사는 한 회사(모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발행 주식(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자회사를 말함. 즉, 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이 모회사에 완전히 종속된 형태로, 자회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모회사에 있음.

회사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차입 및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출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제3호) 투자목적회사는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음.

투자목적회사는 투자가 종료되면 수익을 배분하고 청산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이므로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4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을 규정하였음.

투자목적회사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완전자회사로 설립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 관리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맡고 있으므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투자목적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운용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임.

한편, 개정안 제14조의2제2항은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규정을 적용하되, 설립등기 시 자본금과 발행주식 수 등의 등기 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이는 투자수단으로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의 성격상 발행주식, 출자 1좌 금액 등의 기재가 불필요하고, 설립 이후에도 추가적인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설립 시 자본금 등기 의무를 제외한 것으로 보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³³⁾, 「벤처투자법」³⁴⁾ 등 유사 입법에서도 투자목적회사의 설립등기 시 자본금 등 등기 의무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 제14조의2제4항은 투자목적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이 가능함), 해당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을 사무소에 갖추어 비치하고(투자목적회사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완전자회사로 설립되어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지 않음)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정안 내에서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벤처투자법」 제51조의2제2항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인수·합병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에 단독으로 100% 출자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100%→60%)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합병회사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구조의 유연성을 높이고, 합병 이후에도 피합병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의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함임.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기관 등의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투자를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⑦ 「상법」 제317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하는 것을 투자목적회사 설립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농식품 투자 시장에서 아직까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인수·합병 목적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고 인수·합병목적의 투자조합도 존재하지 않아 인수·합병을 위한 목적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았음.

향후 농식품 투자시장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인수·합병 목적의 투자조합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할 경우 벤처투자법과 같이 인수·합병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차입근거 마련

현행법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³⁵⁾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할 수 없음³⁶⁾.

이는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차입을 허용하여 조합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게 될 경우 투자실패의 위험이 조합 전체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조합 명의의 차입을 금지한 것임.

그러나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금 소진 후 농식품경영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후속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은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차입이 불가능하므로 투자조합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후속투자를 원하는 농식품경영체가 해당 투자조합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기가 어려움.

이는 농식품경영체의 성장지연 및 자산 매각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식품투자조합의 자금 차입을 허용한다면, 농식품경영체는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통해 차입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지속 유치할 수 있고, 농식품투자조합은 성장한 기업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음.

35) 현재 농식품투자조합은 140개('24.12.26. 기준 / 청산조합 24개 포함 / 농식품계정 120개, 수산계정 20개)

36)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설립목적에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또한 투자목적회사는 농식품투자조합과 별개의 조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이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자본금까지만 책임을 지고 자본금을 초과한 손실금은 조합에 전가되지 않아 차입을 허용하더라도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투자목적회사의 차입을 허용하고, 차입 한도, 투자 비율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식품투자조합 본래 투자사업과의 수익성 및 위험성과 무관하게 투자목적회사만으로 자금조달 및 신용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펀드의 유동성 확보, 기 투자기업 중 스케일업³⁷⁾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적극적 후속투자 확대 등을 위해서는 외부 추가 자금의 차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탄력적인 자금 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벤처투자법」 역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자금 차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 12월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400% 이내로 하고, 투자금액의 전액을 단일법인 또는 단일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³⁸⁾.

37) 스케일업(Scale-up)은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성장시키는 과정을 뜻함. 이는 주로 매출, 생산, 인력, 시장 점유율 등을 빠르게 확대하여 기업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포함함.

3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⑥ 법 제51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가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자금운용 규모가 커지면 부실 투자로 인하여 유한책임조합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목적회사 설립 시 농식품투자조합의 동의 또는 총회 의결 절차 등을 거치는 등의 내부 통제 방안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³⁹⁾.

⑦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39)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시행령에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투자목적회사 설립으로 인한 투자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내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의견임.

4.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안 제19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을 정의하고, 그 운용 주체와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투자 의무 및 행위 제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이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1. 벤처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

현행	개정안
	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4조제5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현행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를 전제로 결성 가능하고 민간 주도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근거가 없어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농식품분야 민간 모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11조⁴⁰⁾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수협 조합 및 중앙회, 집합투자업자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상 농림수산물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없이 민간 금융기관 등의 출자만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관련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현행법상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근거 없음	사업성, 수익성이 높은 부문은 민간 주도로 결성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이 담당하여 민간 투자 확대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 가능 * 농산업 분야 중 출자수요와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민간 주도로 투자하는 민간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농식품경영체의 사업확장·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금 집중 지원 가능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19. 제출)

40)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비교표】

구 분	설립요건	근거법	소관부서	투자대상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자본금 20억원 이상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총 자산 규모별로 투자의무비율 차등, 등록 후 3년 이내 일정비율 이상을 창업, 중소,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자본금 100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및 벤처 투자의무 없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이로 인해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자생적인 민간자본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농식품 투자시장은 기후 온난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타 산업 투자시장 대비 위험이 높고, 투자자와 농식품기업 간 정보 비대칭이 크며, 생산 및 상품화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가격 및 시장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산업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 <농식품분야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민간 모펀드 조성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유망경영체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⁴¹⁾.

41)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 원 유치”, 2023.6.21.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투자 목적의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 3,000억 원 이상의 민간 펀드를 결성하고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유망경영체에 투자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3. 6. 2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민간모펀드와 정책펀드 비교】

구분	민간모펀드(농식품)	정책펀드
재원	민간자금	정부자금
출자주체	민간 기업	정부
목적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물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투자대상	VC가 운용하는 농식품 펀드	VC가 운용하는 농식품 펀드
운용방식	민간 투자자의 투자 의사 반영	정부의 정책적 목적 반영
투자분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	청년, 초기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27. 제출)

이에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민간 모펀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농산업 분야 중 출자수요와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민간 주도로 투자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농식품 경영체의 사업확장·해외진출 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개요】

개념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이하 “민간모펀드”)
역할	수익성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 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하는데 기여
현황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7개국에서 민간모펀드 22개 조성(*21.11월 Preqin 조사)
장점	펀드 운용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VC가 운용해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 중심의 운용자산 구성(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 가능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24. 제출)

참고로, 「벤처투자법」 역시 2023년 4월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에 국내 민간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을 한 바 있음⁴²⁾(법률 제19395호, 2023.4.18. 개정, 2023.12.21. 시행).

4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벤처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

현재도 「벤처투자법」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함. 현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하나벤처스가 운용중인 1개의 조합이 있음.

민간 주도의 벤처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인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은 모펀드의 재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하위 자펀드를 결성하고, 자펀드는 성장성, 수익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를 가짐.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운용구조(안)】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27. 제출)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설립근거를 규정할

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경우,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관리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농식품부로 변경됨. 이에 따라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이 법률상 지켜야 할 준수 여부를 농식품부가 직접 확인·관리하는 등 농식품분야 관련 투자조합을 좀더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측면에서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설립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민간재간접투자조합은 민간 출자 수요 및 수익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민간의 관심도가 낮은 농식품 산업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면, 지난 2월 출범한 국내 최초의 민간모펀드인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의 경우에도 초격차 10대 분야인 로봇, 양자기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원전,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농식품 산업은 제외됨.

한편, 민간재간접 투자조합 관련 개정안과 「벤처투자법」을 비교하면, 개정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는 투자관리전문기관(농금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벤처투자법」에서는 한국벤처투자가 제외되어 있음.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회사(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이므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함.

또한 개정안 제19조의2제4항은 투자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벤처투자법」 제63조의2제4항은 투자비율의 상한(출자금액의 70퍼

센트의 이내)을 법에서 정하고 실제 적용되는 투자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민간재간접 투자조합 관련 개정안과 벤처투자법 비교】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이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벤처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벤처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다른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4조제5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

현행법 제11조제1항43)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자금은 충분하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여력이 부족하거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결정44)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43)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 6. (생략)

44)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출자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심의 결과가 ‘부결’인 경우 농식품모태펀드가 해당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없어 결성을 할 수 없음.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물투자조합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13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용사 선정기준

2. 운용사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펀드에 대한 출자 및 투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제가 있는 운용사에 대한 출자제한조치

5. 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농림수산물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지 여부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타 법상 주요 투자기구인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경우는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지 않아도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자금만으로도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현행법 제11조제1항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 의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각 투자기구별 비교표 】

구분	민간재간접 농식품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근거법령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9조2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	벤처투자법 제50조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4조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주요내용	운용사 등이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결성	운용사 등이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 결성	운용사 등이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 하여 결성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그 외의 자와 공동 출자하여 결성
모태펀드 출자의무	X	O	X	X

구분	민간재간접 농식품투자조합	농림수산물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주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등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 등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주요 투자대상	농식품투자조합	농식품경영체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신기술사업자
투자의무 비율	출자금액 60% 이상 투자	출자금액 60% 이상 투자	출자금액의 20% 이상	제한 없음
존속기간	-	3년 이상	5년 이상	제한 없음
출자금 총액	-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주목적 투자(출 자)	농식품투자조합	농식품경영체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신기술사업자
투자 자율	-	상장 주식 투자 제한 없음(사모 방식만 가능)	상장주식 투자는 개별 조합 출자금 총액의 20% 이내, 동일 운용사의 전체 조합 20% 이내로 제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금지	제한없음
자펀드 조합원수 산정	-	-	10% 이상 출자시 모펀드 조합원수 전원을 자펀드 조합원수에 산입	제한없음
자펀드 동시운용	-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 금지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금지	제한없음

※ 주 : 존속기간, 출자금총액, 주목적 투자, 투자 자율, 자펀드 조합원수 산정, 자펀드 동시 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27. 제출)

또한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 방식을,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벤처투자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수정하여 타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	「벤처투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수정의견
제19조의2(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이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벤처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수정의견 1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이란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19조의2(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농식품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벤처투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수정의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수정의견 2안> : 정의규정 없이 제19조의2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 제19조의2(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서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이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으로, 제19조의2에서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포함되지 않음. 추후 산림조합중앙회도 민간 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⁴⁵⁾.

한편, 농식품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개인의 투자조합 출자 시 별도의 세제(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임.

【 투자조합 관련 조세특례 현황 】

구분	농식품 투자조합	민간재간접 농식품 투자조합	벤처투자 조합	민간재간접 벤처투자 조합
(개인) 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 (조특법 §16조)	적용 x	적용 x	적용 o	적용 o
(법인) 투자조합 투자금 세액공제 (조특법 §13의2조)	o	x	o	o
(양도차익)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13·14조)	o	x	o	o
(부가가치세) 출자관리·운용용역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조)	o	x	o	o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0. 제출)

45) 이러한 수정의견에 대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도 동의한다는 의견임.

5. 행정처분 및 등록의 취소 사유 추가(안 제28조 및 제30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식품투자조합이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신규 도입할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하고,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30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농식품투자조합</u>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처분) ----- ----- <u>농식품투자조합 또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u> ----- ----- --.
1. <u>제13조제1항</u> 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u>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u> -----
2. <u>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u> 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u>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창업기획자</u> ----- -----

현행	개정안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신 설>	4.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제5항 또는 제19조의2제5항-----
6.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농식품투자조합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8.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30조(등록의 취소) ----- ----- 농식품투자조합,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 -----. -----.

현행	개정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등록한</u> 경우	1. ----- -- <u>등록 또는 변경등록한</u>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u>같은 항 제3호</u>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 -----. ----- ----- <u>제13조제1항제3호</u> ----- ----- ----- ----- -----.
3.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3항, 제14조제5항 또는 제19조의2제4항----- -----
<u><신 설></u>	4.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행정처분 및 등록의 취소와 관련하여 신규 도입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과 투자목적회사, 자펀드 운용사로 참여가 가능한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개정안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28조(행정처분)는 농식품투자조합이 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재를 함으로써 신설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창업기획자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되거나,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이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출자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식품투자조합의 경우에도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60%)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제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14조제3항). 유사입법례인 「벤처투자촉진법」에서도 벤처투자조합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모두 등록 후 3년이 지난날까지 투자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로 보임.

현행법 제30조(등록의 취소)는 ① 농식품투자조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출자의무 기한 내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이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와 투자목적회사가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에도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우선, 개정안 제14조의2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등록의 취소 대상에 투자목적회사가 포함되어 있어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

또한 개정안 제19조의2(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는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출자금 총액”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음.

제30조제2호에서는 제19조의2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만을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9조의2 ‘제1항’도 등록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인 「벤처투자법」⁴⁶⁾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에 제

46) 「벤처투자법」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벤처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⑥ (생략)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취소, 6개

63조의2제1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14

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참고 1 농식품모태조합 예산조성 및 자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펀드결성금액(개수)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10
재원조성	정부	예산	1,678	600	500	300	200	100	200	350	400	400	400	550
		회수금 등	124	90	100	600	400	320	300	390	467	1,126	835	330
		소계	1,802	690	600	900	600	420	500	740	867	1,526	1,235	880
		민간	1,728	450	460	555	420	305	481	767	811	1,005	773	642
		계	3,530	1,140	1,060	1,455	1,020	725	981	1,507	1,678	2,531	2,008	1,522
자펀드조성	일반펀드	농식품 일반	310 (2)	320 (3)	640 (3)	755 (2)	500 (3)	200 (1)	630 (2)	752 (2)	392 (2)	800 (2)	602 (3)	300 (1)
			2,200 (12)	290 (1)	-	-	-	-	-	-	-	-	-	-
	특수목적펀드	8대 프로젝트	520 (2)	-	-	-	-	-	-	-	-	-	-	-
		소규모 경영체	200 (2)	100 (1)	100 (1)	-	-	-	-	-	-	-	-	-
			300 (3)	-	-	-	-	-	-	-	-	-	-	-
		6차산업	-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	-	-	-	-	-
			-	-	-	-	-	-	-	-	-	-	-	-
		수출	-	130 (1)	100 (1)	100 (1)	-	-	-	-	-	-	210 (1)	-
			-	-	-	-	-	-	-	-	-	-	-	-
		R&D	-	100 (1)	-	-	-	-	-	-	-	-	-	-
		AgroSeed	-	100 (1)	-	-	-	-	-	-	-	-	-	-
		창업펀드	-	-	120 (1)	-	-	-	-	-	-	-	-	-
		스마트팜	-	-	-	500 (3)	-	-	-	-	-	-	-	-
		ABC	-	-	-	-	420 (2)	-	100 (1)	-	-	-	-	-
		농식품벤처	-	-	-	-	-	125 (1)	125 (1)	260 (2)	225 (2)	395 (3)	125 (1)	-
		지역특성화	-	-	-	-	-	100 (1)	-	110 (1)	-	-	120 (1)	-
		세컨더리	-	-	-	-	-	200 (1)	-	-	520 (1)	-	200 (1)	301 (1)
		마이크로	-	-	-	-	-	-	125.5 (2)	65 (1)	65 (1)	195 (3)	65 (1)	-
		징검다리	-	-	-	-	-	-	-	220 (1)	-	216 (1)	-	-
		영파머스	-	-	-	-	-	-	-	100 (1)	105 (1)	105 (1)	152 (1)	200 (2)
		그린바이오	-	-	-	-	-	-	-	-	150 (1)	400 (2)	204 (1)	210 (1)
		스마트농업	-	-	-	-	-	-	-	-	150 (1)	410 (2)	200 (1)	200 (1)
		창업보육	-	-	-	-	-	-	-	-	71.44 (1)	-	-	-
		푸드테크	-	-	-	-	-	-	-	-	-	-	100 (1)	210 (1)
		직접투자	-	-	-	-	-	-	-	-	-	10 (1)	30 (1)	-
		청년창업	-	-	-	-	-	-	-	-	-	-	-	-
		전통주	-	-	-	-	-	-	-	-	-	-	-	101 (1)
		계	3,530 (21)	1,140 (9)	1,060 (7)	1,455 (7)	1,020 (6)	725 (5)	981 (6)	1,407 (8)	1,678 (10)	2,531 (15)	2,008 (13)	1,522 (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참고 2 농식품 분야 투자 현황

- '23년말 농림어업분야 상장기업은 6개(코스피 4, 코스닥 2), 시가총액은 2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0.09% 수준(코스피의 0.1%, 코스닥의 0.04%)
 - * 식품분야 포함 시 시가총액 비중은 1.3% 수준(코스피(40개) 1.3%, 코스닥(44개) 1.3%)
- '23년 농식품분야 신규 벤처투자는 1,164억 원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약 11조 원)의 1.3% 수준(중기부, 한국벤처투자협회)
- 한편, 첨단기술(ICT·AI 등)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의 발전은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제시
 - * (스마트농업) 생산량 34%↑, 소득 40%↑, (푸드테크) 국내 시장 연평균 31% 성장(17~'20년)
- 특히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통해 투자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함에 따라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
 - * 모태펀드 투자를 통해 (예비)유니콘기업 14개사(유니콘 1, 예비 13), 상장 7개사 배출 등

구 분	주요 내용	
(주)컬리	- 사업내용 : 신선식품 유통 플랫폼(마켓컬리) 운영 - 투자현황 : 60억원('16~'18), 213억원 회수(투자원금 46억원 대비 수익률 363%) - 매출 현황 : ('21) 15,579억원 → ('22) 20,335 → ('23) 20,727	
우듬지팜	- 사업내용 : 대규모 스마트팜에서 토마토 등 생산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개발·판매) - 투자현황 : 90억원('17, '20), 487억원 회수(원금 83억원 대비 수익률 486%) - 매출 현황 : ('21) 467억원 → ('22) 449 → ('23) 563 '23년 코스닥시장 상장	
아몬드프레시	- 사업내용: 아몬드우유에 발효공법을 접목시켜 100% 비건치즈 개발 - 투자현황 : 55억원('20~'22), 19억원 회수(투자원금 10억원 대비 수익률 90%) - 매출 현황 : ('21) 95억원 → ('22) 128 → ('23) 138 美 뉴욕 등 오프라인 매장 200곳에 납품 '22년 중기부 '예비 유니콘 기업' 선정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참고 3 세컨더리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펀드결성금액(개수)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재원조성	정부	예산	1,678	600	500	300	200	100	200	350	400	400	400	550	5,678	
		회수금 등	124	90	100	600	400	320	300	390	467	1,126	835	330	5,082	
		소계	1,802	690	600	900	600	420	500	740	867	1,526	1,235	880	10,760	
	민간		1,728	450	460	555	420	305	481	767	811	1,005	773	642	8,397	
	계		3,530	1,140	1,060	1,455	1,020	725	981	1,507	1,678	2,531	2,008	1,522	19,157	
자펀드조성	일반펀드	농식품 일반	310 (2)	320 (3)	640	755	590	200	630	752	392	890	692	300	6,201 (26)	
			220 (2)	290 (1)											2,490 (13)	
	특수목적펀드	8대 프로젝트	520 (2)	-	-	-	-	-	-	-	-	-	-	-	520 (2)	
		수급 경영체	200 (2)	100	100	-	-	-	-	-	-	-	-	-	200 (3)	
			500 (5)													
		6차산업	-	100	100	100	100	100	-	-	-	-	-	400 (4)		
														100 (1)		
		수출	-	130 (1)	100	100	-	-	-	-	-	-	210	-	440 (3)	
															100 (1)	
		R&D	-	100 (1)	-	-	-	-	-	-	-	-	-	-	100 (1)	
		AgroSeed	-	100 (1)	-	-	-	-	-	-	-	-	-	-	100 (1)	
		창업보육	-	-	120 (1)	-	-	-	-	-	-	-	-	-	120 (1)	
		스마트팜	-	-	-	500 (3)	-	-	-	-	-	-	-	-	500 (3)	
		ABC	-	-	-	-	420 (2)	-	100 (1)	-	-	-	-	-	520 (3)	
		농식품벤처	-	-	-	-	-	125 (1)	125 (1)	260 (2)	225 (2)	395 (3)	125 (1)	-	1,255 (10)	
		지역특성화	-	-	-	-	-	100 (1)	-	110 (1)	-	-	120 (1)	-	330 (3)	
		세컨더리	-	-	-	-	-	200 (1)	-	-	520 (1)	-	200 (1)	301 (1)	1,221 (4)	
		마이크로	-	-	-	-	-	-	125.5 (2)	65 (1)	65 (1)	195 (3)	65 (1)	-	515.5 (8)	
		징검다리	-	-	-	-	-	-	-	220 (1)	-	216 (1)		-	436 (2)	
		영 파머스	-	-	-	-	-	-	-	100 (1)	105 (1)	105 (1)	152 (1)	200 (2)	662 (6)	
		그린바이오	-	-	-	-	-	-	-	-	150 (1)	400 (2)	204 (1)	210 (1)	964 (5)	
		스마트농업	-	-	-	-	-	-	-	-	150 (1)	410 (2)	200 (1)	200 (1)	960 (5)	
		창업보육	-	-	-	-	-	-	-	-	71.44 (1)	-	-	-	71.44 (1)	
		푸드테크	-	-	-	-	-	-	-	-	-	-	100 (1)	210 (1)	310 (2)	
		직접 투자	-	-	-	-	-	-	-	-	-	-	10 (1)	30 (1)	-	40 (2)
		창업인센티브	-	-	-	-	-	-	-	-	-	-	-	-	-	-
		전통주	-	-	-	-	-	-	-	-	-	-	-	-	101 (1)	101 (1)
계			3,530 (21)	1,140 (9)	1,060 (7)	1,455 (7)	1,020 (6)	725 (5)	981 (6)	1,407 (8)	1,678 (10)	2,531 (15)	2,008 (13)	1,522 (8)	19,157 (11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2024.12.3. 제출)

※ 청산된 조합의 경우, 회색셀로 표시(청산펀드의 펀드결성금액)